

PL(제조물책임) 경고결함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구축

선정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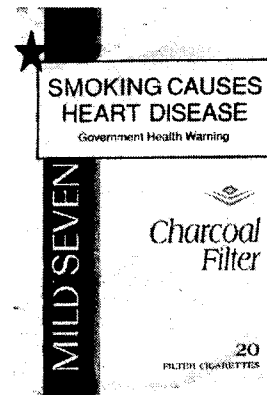
- ☞ 제품 본연의 안전성 개선에 비행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접근 용이
- ☞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설계결함이나 제조결함보다 상대적으로 입증용이
-> 소송 수에서 월등히 앞섬

- 순 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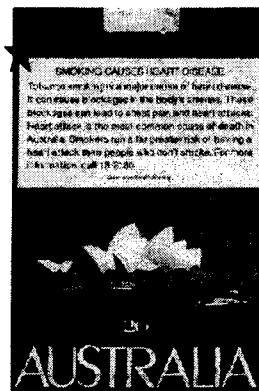
1. 외국담배의 경고표시의 예
2. PL소송사례
3. 경고결함 대응방안
4. 결 론

1. 외국 담배 경고표시의 예

(앞면)



(뒷면)



(MILD SEVEN의 오스트레일리아 수출담배)

1. 외국 담배 경고표시의 예

(앞면)

**SMOKING CAUSES
HEART DISEASE**
Government Health Warning

(뒷면)

SMOKING CAUSES HEART DISEASE.
Tobacco smoke is a major cause of heart disease. It can cause blockages in the body's arteries. These blockages can lead to chest pain and heart attacks. Heart attacks is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in Australia. Smokers run a far greater risk of having a heart attack than people who don't smoke. For more information call 13 27 89.
Government Health Warning

- 내용 : 흡연은 심장질환을 유발합니다.

- 시사점 : 경고표시의 시인성(사용자 고려)

내용의 영료성

(must be 나 can be,will 안슴)

- 내용 : 흡연은 심장질환의 주요 요인

가슴에 고통,심장쇼크 유발

심장쇼크는 사망의 주요 원인

- 시사점 : 위험의 내용과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

2. PL소송사례

1) 예상되는 잠재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경우

① 사건개요

슈퍼맨파자마(서양식 잠옷)를 입은 어린이가 TV광고를 모방, 옥상에서 추락하여 인신사고 발생함

② 원고주장

실현 불가능한 현상을 과대광고하고, 어린아이들이 이 광고를 보았을 경우 흉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고표시를 했어야 함

③ 피고주장

TV광고는 제품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파자마의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은 제조사의 과실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어린이 행동을 제재하지 못한 부모의 과실이 더 큼.

④ 판결(원고승소)

“대중”이란 무지하고 사려가 짧고 경솔하여, 쇼핑을 할 경우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고 종종 외관이나 인상에 의해 기분이 바뀌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제조,공급자는 소비자에 대한 사용환경 및 예상되는 잠재위험에 대해 충분히 예방하고 경고할 의무가 있음.

사후조치 “부모님께

감수성이 풍부한 자녀가 이 파자마를 입으면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을 자녀분께 주의하도록 해주세요.”

2. PL소송사례

2) 경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된 경우

① 사건개요

40년 동안 하루에 말보러 2갑을 피우다 99년 폐암선고를 받은 리처드 뇌켄이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사기, 과실, 제품 결함 등 여섯 개 죄목을 적용해 소송

② 원고주장

- 담배의 피해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날조
- 담배케이스에 경고표시 의무화(66년) 이전에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며, 건강하고 안전하다며 고의로 허위광고·선전.

③ 피고주장

흡연이 폐암을 유발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그가 담배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흡연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함.

④ 판결(원고승소)

뇌켄이 불치의 폐암에 걸린 것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담배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전부 인정함.

- > 징벌적 손해배상금 30억달러(약 3조9천억원),
일반적인 건강 피해 배상금 5백50만달러 지급 판결

필립모리스는 "제품의 하자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기보다 이를 은폐하려는 데만 급급했다" 며 "30억달러의 배상금이라 해도 이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는 없다고 판결함.

필립 모리스, 흡연사 유족에 1억5천만불 배상판결

- 사건개요: 35년간 흡연한 남편이 1999년 폐암으로 사망하자 부인인 미셸 슈와츠 여사가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 제기(3억달러 배상제기)
- 미국 법원(미 오리건주(州) 포틀랜드 지방법원)은 22일 필립모리스에 51%의 책임이 있다면서 흡연자의 유족에게 1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
- 필립모리스는 소비자들에게 "저타르 담배는 안전하며 흡연을 줄이기 위한 대안품이라고 홍보"(부정행위)
(워싱턴 AFP=연합뉴스). 기사 입력시간 : 2002.03.23 16:15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필립모리스, 배상판결로 주가 하락 | 03/26 08:32 | 조회 1388

[머니투데이] 폐암사망자에 대한 배상판결로 필립모리스의 주가가 거의 3% 가까이 떨어졌다.
(중략)
말보로와 벤슨 등을 만드는 필립모리스는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전날보다 2.88%(1.54달러) 떨어진 51.95 달러로 마감했다.

푸르덴셜 증권외 애널리스트인 캄파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담배회사들이 소송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경제신문 · ㈜머니투데이 2002

3. 경고결함 대응방안(1)

1) 정 의(제조물책임법: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의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경고결함의 종류

제품과 관련된 잠재위험(Risk of Injury)에 대해

- 경고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Failure to Warn)
- 부적절한 경고(Inadequate Warning)를 하였을 경우

3)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해결하기 힘든 위험성은 지시·경고에 의해 면책가능성이 있으나,

안전설계가 용이한 경우에는 지시·경고에 의한 면책은 인정되지 않음

4) 개발위험의 형변과 경고결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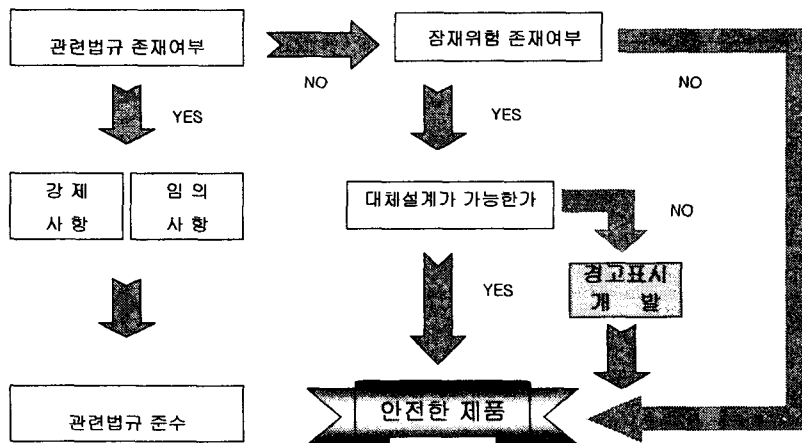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판매 후라도 기술수준의 상승으로 위험을 인지한 경우 경고해야 함

(예: 건축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이 폐에 해롭다는 경고)

그렇다면,우리나라는?

3. 경고결함 대응방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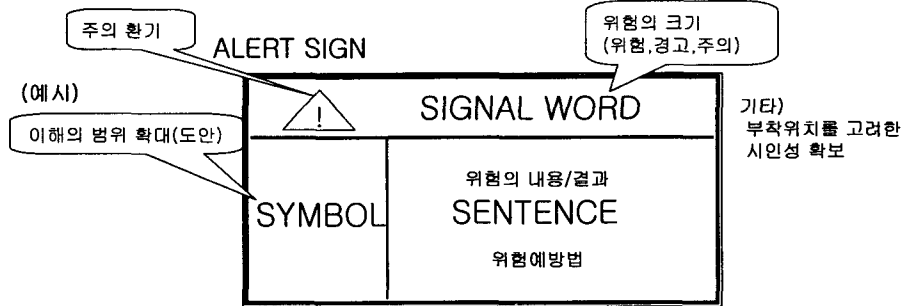
5) 경고표시 개발절차



3. 경고결함 대응방안(3)

6) 경고표시 구성요소

- ① 위험의 크기 (Level of Hazard) : 소비자에게 위험의 크기를 경고
- ② 위험의 내용 (State Hazard) : 위험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
- ③ 위험의 결과 (Describe Consequence) : 경고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묘사
- ④ 위험 예방법 (Instruct how to avoid) : 위험을 회피/예방방법 설명
- ⑤ 이해의 범위 (Show and Tell) : 모든 사용자(어린이와 문맹을 포함)가 쉽게 인식(도안)
- ⑥ 시인성(Visible and Readable) : 눈에 잘 띄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함



3. 경고결함 대응방안(4)

7) 경고표시 작성방법

- ☞ Signal Word : 표준화 Signal Word 사용
 - 위험(DANGER) : 피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하는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
 - 경고(WARNING) : 피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황
 - 주의(CAUTION) : 피하지 않을 경우 경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황
- ☞ symbol : 지시문의 이해에 도움/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 ☞ sentence : 문구는 쉽고 간결하고 명확해야 함
 - 행동적인 표현을 쓴다.
 -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대신에 동사를 쓴다.
 - 명확하게 단언한다.
 - 너무 길게 쓰지 않는다.
 - 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 연설조나 애매한 표현을 피한다.
- ☞ 부착위치
 - 직접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 부착
 - 시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빛이나 보는 각도 등 주위환경을 고려

3. 경고결함 대응방안(5)

※ 경고표시의 주요 쟁점사항

1. 경고문을 해당국의 모국어로 작성하면 완벽한가?
 - 예상되는 소비자의 언어사용 실태 반영 (다국어 사용가능)->사용언어에 따른 경고
2. 사용설명서에만 사용법과 위험예방법을 자세히 기재하면 되는가?
 -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소비자도 있다.->별도의 경고
3. 모든 위험사항을 "Danger"라고 경고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 경고를 남발하면 사용자가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김. 경고효과 감소->적절한 위험정도 구분
4. 용도이외의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가?
 - 제조자나 판매자는 소비자나 사용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 있으며, 오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1차적으로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있다. ->예견가능한 오사용도 경고
5. 제조업자가 경고를 하였다고 하여 결함 없는 제품으로 간주되는가?
 - 법정에서 판단의 기준은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는가", "위험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임.
 - >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 더불어 제조업자의 위험예방노력이 동시에 중요
6. 판매 후 경고의무(Post-sale duty to warn)는 계속적으로 존재하는가?
 - 잠재적 위험이 판매 후 현재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경고

4. 결론

경고결함 예방을 포함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최고 가치인 고객만족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 요건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1) 전직원의 필요성 인식을 기반으로
- (2) 체계적인 제품위험성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소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 (3) 개발/설계, 생산, 판매, A/S 등의 전사적인 개선활동이 반드시 요구됨.